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9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년 6월 20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 중 조항 인용의 착오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제7조제1항의 “제4조의”를 “제6조의”로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제4조의”를 “제6조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<u>제4조의</u>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7조(예산지원) ① <u>제6조의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체육복지”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·아동·청소년·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체육복지진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체육복지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체육복지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
3.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현황분석
4. 체육복지 진흥 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체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체육복지 진흥사업)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
 2.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3.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
 4.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
 5.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체육회나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표창) ① 시장은 체육복지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